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11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73	권칠승의원	2025.2.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09625	오세희의원	2025.4.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기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22.)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중소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육성을”을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로,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이라”를 ““종합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에는”을 “종합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의”로, “혁신”을 “경영 안정, 성장 지원”으로, “육성을 위한 시책에”를 “혁신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

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지원”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본계획에”를 각각 “종합계획에”로, “지원”을 각각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각 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소상공인 <u>지원 기본계획</u> 수립 및 운영 체계	제2장 소상공인 <u>보호와 육성에</u> <u>관한 종합계획</u> 수립 및 운영 체 계
제7조(소상공인 <u>지원 기본계획</u> 수립·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 인의 <u>보호·육성</u> 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u>지원</u> <u>기본계획</u> (이하 “ <u>기본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제7조(소상공인 <u>보호와 육성에</u> <u>관한 종합계획</u> 수립·시행) ① ----- <u>보호와 창</u> <u>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u> <u>성장을</u> ----- ----- <u>보호와 육성에 관</u> <u>한 종합계획</u> -----“ <u>종합계획</u> ” <u>이라</u> ----- -----.
② <u>기본계획</u> 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u>종합계획</u> 을----- ----- -----. ----- -----.
③ <u>기본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u>종합계획</u> 에는----- -----.
1. 소상공인 <u>지원정책의 기본방</u> <u>향</u>	1. ----- <u>보호와 육성 정책</u> <u>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u> <u>에 관한 사항</u>	3. ----- <u>보호와 육성에 관</u> <u>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u>
4. <u>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u> <u>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u>	4. <u>소상공인의</u> ----- <u>경영 안</u> <u>정, 성장 지원</u> ---- <u>혁신에</u> ---- -----
5. <u>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u> <u>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u> <u>한 사항</u>	5. <u>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u> <u>관한</u> -----
<신 설>	6. <u>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u> <u>한 사항</u>
<신 설>	7. <u>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u> <u>발전 방안</u>
<신 설>	8. <u>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u> <u>화에 관한 사항</u>
<신 설>	9. <u>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u> <u>에 관한 사항</u>
<신 설>	10. <u>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u> <u>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u> <u>성에 관한 사항</u>
<신 설>	11. <u>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u> <u>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u> <u>한 사항</u>
<신 설>	12. <u>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u> <u>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u>
<신 설>	13. <u>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u> <u>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u>
<신 설>	14. <u>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u>

<신 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종합계획-----

-----.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종합계획에-----

보호와 육성에 관한-----

-----.

② -----

-----종합계획에-----

-----보호와 육성에 관한-----

-----.

③ ~ ⑥ (생 략)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생 략) 2. <u>기본계획의</u>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③ ~ ⑦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종합계획의</u>----- -----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